

안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안 번호	1008
----------	------

제출년월일 : 2001. .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자활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안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동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기금으로 행하는 사업에 따라 기금을 자활사업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으로 구분함 (안 제4조).
- 나.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도록 함 (안 제5조).
- 다.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심의위원회를 두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산시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함 (안 제6조).
- 라. 자활사업지원금의 용도 및 지원대상을 정함 (안 제9조,제10조).
- 마.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한도액을 명시하고 상환기간·이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
- 바. 생활안정자금의 용도는 일반융자금과 학자금융자금으로 구분함 (안 제18조).
- 사. 생활안정자금의 대여금액·상환기간·이율 등을 규정함 (안 제20조).
- 아.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함 (안 제24조).
- 자. 안산시저소득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함(안 부칙 제2조).

차.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한 것으로 봄 (안 부칙 제3조).

제정조례안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같은 법시행령 제41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 안산시출연금 20억원(연 4억원, 2002년~2006년)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 2001. 11. 1 ~ 11. 20일(20일간)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안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방안

○ 안산시저소득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

안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안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라 함은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를 말한다.
3. “자활공동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시장은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안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 (기금의 구분) 기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자활사업지원금
2. 생활안정자금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별로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외로 처리한다.

③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한다.

④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대여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여금 관리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그 경우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금 관리업무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금융기관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①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초생활보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산시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자활사업지원금

제8조 (기금의 조성) 자활사업지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안산시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
5. 자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국·도비보조금 및 기타수입금

제9조 (기금의 사용) 자활사업지원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매년 수립하는 안산시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금액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5.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

제10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안산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의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11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 및 지원금액 등을 명시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 ①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규모·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대여금을 5년거치후, 5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금의 이자는 연 5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치기간 중에도 또한 같다.

④이자는 대여일을 기준으로 매월 정한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여금을 사유발생 즉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목적이외의 용도로 대여자금을 사용한 때

제13조 (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율과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의 이자율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당해 사업내용 및 대출경위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시장은 자활공동체가 제12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4조 (사업변경)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점검 등)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자의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지원취소)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목적이외의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거나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3장 생활안정자금

제17조 (기금의 조성) 생활안정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안산시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18조 (기금의 사용) ①생활안정자금은 관내 수급자의 생활안정과 자립·자활을 위한 대여금으로 사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금은 일반용자금과 학자금용자금으로 구분한다.

③일반용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금의 용자에 사용한다.

1. 영세상행위를 위한 사업자금
 2.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3. 불의의 재난·사고 처리자금
 4. 기타 시장이 생활안정자금의 사용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 ④ 학자금융자금은 수급자 본인 또는 수급자의 직계비속의 대학(전문대학 포함) 학자금 용자에 사용한다.

제19조 (대여기준) 생활안정자금의 대여 대상은 근로능력이 있고 자활의욕이 강한 수급자로서 대여신청일 현재 안산시 관내에 1년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제20조 (대여금액·상환기간·이율 등) ① 일반융자금은 1세대당 1천만원이하로 하고, 학자금융자금은 1세대당 2백만원이하로 한다.

② 융자금의 상환기간 및 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융자금 : 2년거치 3년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으로 하고 이율은 연 5퍼센트로 하며,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2. 학자금융자금 : 학교를 졸업(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2년거치 3년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으로 하고 이율은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3. 연체이율 : 융자금을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제21조 (대여신청 및 결정) 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을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거주지 동장(출장소장)의 추천서
 2. 재학증명서(학자금융자에 한함)
 3. 융자금에 상응하는 신용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인의 재정보증서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천요청을 받은 동장(출장소장)은 해당자의 융자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추천서를 해당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여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용자금의 상환 등) ①시장은 생활안정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시장은 생활안정자금을 용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용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제18조 규정에 의한 용도이외에 자금을 사용한 때
2. 안산시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제4장 기금 운용계획 등

제23조 (기금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기금운용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24조 (기금관리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한다.

제25조 (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감면조치)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회수된 용자금(이자포함)을 감면할 수 있다.

제27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안산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저소득주민지원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기존 용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안산시저소득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용자한 용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용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자조건등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저소득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안산시저소득주민지원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생활안정자금 계정으로 이입조치한다.

소관 실·과		사 회 여 성 과
입	실·과장 직위·성명	사회여성과장 임 영 선
안	담당·팀장 직위·성명	복지사업1팀장 조 두 행
자	담 당 자 성명·전화	박 소 운 (행정 2869)

안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방안

- 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0 안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안정과 저소득주민의 자립·자활에 기여하고자 함.

□ 방 침

- 0 안산시저소득주민지원기금과 통합 운용
- 0 사전입법예고 및 홍보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 법적근거

- 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4조
- 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41조

□ 필 요 성

- 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주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 지원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매우 미비하며 지역별로 편차가 큰 실정임.

0 우리시는 2001. 8. 31일 현재 간병도우미사업외 12개의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을 자활후견기관 등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자활근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시장확보에 따른 수익금의 증가로 수익금을 적립할 수 있는 관련법규 및 기금의 설치가 필요한 실정임.

※ 수익금(2001.8.31현재) : 37,955천원

- 수익금은 자활사업 수탁단체에서 별도 관리 중

0 또한 수급자들의 창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자활공동체사업 참여를 통한 자활능력 향상과 자활의욕 고취를 통한 탈빈곤화를 지향하는 자활공동체의 설립이 2001년 하반기 자활사업의 주요 목표로 설정됨.

※ 자활공동체 창업 조건

- 2인이상 창업시 가능

- 사업자금 및 점포대여자금 소요

0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 바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활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금의 설치가 필요함.

□ 기금의 용도

-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어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 지역자활자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자활공동체 또는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20% 이내)

□ 기금의 조성 ————— 50억원

- 국고보조금 : 2002년 지원예정
- 시의 출연금
 - 20억원(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4억원씩)
- 자활근로사업 수익금 및 기타수입금

□ 타 지역 보장기금 설치 현황

지역별	조례제정일자	설치현황	조성액	비고
부천시	2001. 5. 15	단독설치	20억원	4억원/년
성남시	추진중	단독설치	30억원	10억원/년
안양시	추진중	통합설치	100억원	10억원/년
수원시	미정	-		
시흥시	미정	-		
광명시	미정	-		

□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방안

- 기금은 자활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용
- 일정한 규모이상 기금이 적립되어야만 기금의 운용을 통한 이자수익 등으로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나 기금이 조성되는 과정에서는 이자수익만으로는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 기금의 30%범위내에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등의 사업을 수행토록 함.
-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는 자활공동체 구성원중 수급자가 1/3이상인 자활공동체에 한하여 지원하며
- 자활공동체가 창업을 위한 점포 임대를 요구할 경우 시장이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파산 및 해산에 대비하도록 함.
- 현행 저소득주민지원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통합·운용 하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활사업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으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함.
- 안산시저소득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 조례는 폐지

□ 안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붙임

안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008
----------	------

제안년월일 : 2001. 12. 20.

제안자 : 경제·사회위원장

1. 수정이유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학자금융자에 있어서 1세대당 2백만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한학기 학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금액이며
- 대학생이 2명이 될 경우 입학하는 1명은 지원이 불가능하고 졸업시까지 2백만원이 이외에는 더 지원할 수 없으므로 지급금액을 좀더 확대하여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수정함.

2. 주요골자

- 안 제20조(대여금액·상환기간·이율 등) 제1항중 학자금융자금은 1세대당 2백만원이하로 한다를 학자금융자금은 1세대당 3백만원이하로 한다로 수정함.

안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0조(대여금액·상환기간·이율 등)제1항중 “2백만원”을 “3백만원”으로
한다.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p>제20조(대여금액·상환기간·이율 등)① 일반융자금은 1세대당 1천만원이하로 하고, 학자금융자금은 1세대당 2백만원 이하로 한다.</p> <p>②(생략)</p>	<p>제20조(대여금액·상환기간·이율 등) ①3백만원</p> <p>②(원안과 같음)</p>